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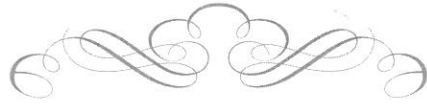
2018년도 임금협약 부수합의서

(주)강원랜드와 (주)강원랜드노동조합은 2018년도 임금협약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□ 부수협약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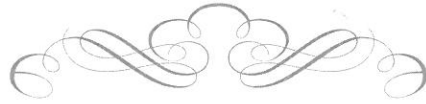
1. 적정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사가 함께 휴무율, 휴게율을 재산정하고 보상휴가제 도입 등 세부사항은 노사가 합의로 정한다.
2.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평가제도를 구축하고, 2018년도 평가에 반영한다.
3. 복잡한 호텔 교대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영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노사가 합의하여 진행한다.
4. 아르바이트 경력 등 영업현장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는 직원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.
5. 회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직무를 지속 발굴한다.





6.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노사가 적극 노력한다.
7. 회사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단체협약 제4조 【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범위】를 변경한다. 세부 사항은 별도 합의한다.
8.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를 하지 아니한다. 근로자의 날 휴일을 대체한 직원에 대하여 휴일수당 50%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(단,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)
9.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50% 가산하여 지급한다.(단,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)
10. 법정 의무(필수)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. ('19.1.1부터)
11. 고충처리위원회는 고객의 성희롱, 폭언 등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긴급한 경우 소속 단위(실)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유급보호휴가(30일 이내)를 부여할 수 있다.
12. 가족사랑 선물 증액은 2019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처리하되 기재부 협의를 거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.





13. 식음영업장 직원할인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('19.1.1부터)

구 분	할인율	비 고
할인율	기존 20% → 30% (주중/주말 동일)	• 본인 외 4인 동반가능
기념일 할인	기존 연1회 50% → 연2회 50% (연2회, OV 케익포함)	

14. 기숙사비는 1인당 3만원으로 조정하고 직원숙소에 냉방기를 설치한다.
('19.1.1부터)

15. 상조용품 지원대상 확대는 상조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('19.1.1부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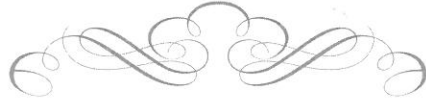
16. 의사 진단을 통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
본인부담금을 회사가 지원한다.

17. 회사는 영업현장 직원의 휴게공간 확보 및 필요한 집기와 비품을
지원함에 있어 영업현장 직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고
반영한다.

18. 근무 중 사망경조 휴가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
날부터 휴가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19.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 단, 회사는 경영상 중대한
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사용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



20. 2017. 1. 1.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1항에 의한 휴가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
21. 선택적 복지포인트 중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는 직원 간 복지혜택의 형평성 및 총인건비 영향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지급한다.('19.1.1부터)
22. 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(탄력적, 선택적 근로시간제)를 도입 한다. 세부 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
23. 직무급제 도입은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.
24.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2019년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
2018년 11월 22일

주식회사 강 원 랜 드 주식회사 강원랜드노동조합

대표이사 문 태 곤 (인)  위원장 송 인 태 (인) 



KANGWON LAND